특 허 법 원

제 5 부

판 결

사 건 2017허6767 거절결정(상)

원 고 A

피 고 특허청장

소송수행자

변론종결 2017. 11. 10.

판 결 선 고 2017. 11. 24.

주 문

- 1. 특허심판원이 2017. 8. 3. 2016원243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

1) 출원번호/출원일: 제41-2015-0032837호/2015. 7. 10.

2) 구 성: (與明金子今)

3) 지정서비스업: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식음료 준비업, 간이식당업, 간이음식점 업, 라면전문점업, 국수전문점업, 레스토랑업, 식당체인업, 일본음식점업, 중국음식점업, 한식점업, 포장판매식당업, 음식준비업.

나. 선등록서비스표

1) 등록번호/출원일/등록일: 서비스표등록 제0324021호/2014. 8. 25./2015. 6. 10.

2) 구 성: 🐼 미소국수

3) 지정서비스업: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, 레스토랑업, 뷔페식당업, 서양음식점업, 셀프서비스식당업, 스낵바업, 일본음식점업, 제과점업, 주점업, 중국음식점업, 카페업, 카페테리아업,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, 커피전문점업, 패스트푸드식당업, 한식점업.

4) 등록권리자: 박수열

다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1) 특허청 심사관은 2015. 11. 25. 원고에게 "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인 '미소국수'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'미소국수'의 호칭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동종의 서비스업이므로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(2016. 2. 29. 법률 제14033호로 전부

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."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, 2016. 3. 24.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.

2) 이에 원고는 2016. 4. 25. 특허심판원 2016원2431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, 특허심판원은 2017. 8. 3.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. 그 이유는 "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공통되는 요부 '미소국수' 부분이 유사하므로,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다. 그리고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.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."는 것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

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중 공통되는 '미소국수' 부분은 '국수' 부분이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라는 점, '미소' 부분은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·유사한 식당업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점, '미소' 부분과 '국수' 부분을 결합하여도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.

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'(本)'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이고,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도 도형 '(**)'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,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요부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외관, 호칭, 관념이 상이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3. 판단

가. '미소국수' 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인지 여부

1) 관련 법리

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대상이 되는 것이므로,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된다고 할 수 없다.

한편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·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,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, 해당 구성 부분의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,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7, 3, 15, 선고 2016후2447 판결 참조).

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.

2) 파단

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'미소국수'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 한 부분으로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가)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중 '국수' 부분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 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서비스업에서 제 공되는 음식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다.

- 나) 갑 제5 내지 9, 12 내지 17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,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'미소' 부분은 그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등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.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에서 '미소'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.
- ① '미소'의 사전적 의미는 '소리 없이 빙긋이 웃음'이다. '미소'는 이 사건 출원서 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간이음식점 등과의 관계에서 "미소로 손님을 응대한다."는 의미가 있어, 실제 음식업계에서 '미소'라는 용어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.
- ② 인터넷 사이트 검색결과에 의하면, 음식업계에서 '미소'가 포함된 상호는 '미소가', '미소복어', '미소집밥', '미소돈삼겹살', '미소식당' 등 1,057건 검색된다.
- ③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5. 7. 10. 이전에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·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'예술장', '미소미', '미소마을',
- '미소담' 등과 같이 '미소'를 포함하는 여러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나 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.
- ④ 선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4. 8. 25. 이후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하여 가니미소, 럭푸드 미소, 하이 미소, 미소랑, 미소한근, 미소면가 등 '미소'를 포함하는 33건의 서비스표가 등록 또는 출원공고되었다.

- ⑤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출원일 전인 2014. 7. 1. 이미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에 관한 ' 교육 ' 표장의 서비스표 출원(출원번호 41-2013-0043847)에 대하여, '미소'는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보낸 바 있다.
- 다) '미소'와 '국수'를 결합하여도 '미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숫집' 이외의 식별 력이 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한다.

나, 이 사건 출위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 여부

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공통되는 '미소국수'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, 이들 표장의 구성에 '미소국수'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.

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 및 선등록서비스표에서 '미소국수'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나 각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이들 표장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는 경우 그 외관·호칭·관념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.

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·유사한 지정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 처에 관하여 오인·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

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4. 결론

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,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오영준

판사 권동주

판사 김동규